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361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3. 주식회사 D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변론 종결2021. 7. 7.

판결 선고2021. 7. 14.

주 문

1.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41,166,253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C과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87,543,424원의 한도 내에서,

다.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40,645,161원의 한도 내에서,

라. 피고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40,645,161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41,166,253원, 피고 C은 87,543,424원, 피고 D, E은 각 40,645,161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피고 C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피고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79,000,000원, 피고 C은 168,000,000원, 피고 D, E은 각 7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 F은 2016. 1.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H 단지형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I동) 신축공사(이하 'I동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2,620,000원,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6. 9. 22. 공사대금을 6,282,147,500원으로 변경하였다.

- F은 2016. 1. 18.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K동) 신축공사(이하 'K동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38,730,500원,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6. 9. 22.경 공사대금을 1,838,730,500원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16. 10. 4. F으로부터 I동 도급공사 중 내장목 공사를 395,620,000원에, K동 도급공사 중 내장목 공사(이하 'I동 내장목 공사' 및 'K동 내장목 공사'라 하고, 양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내장목 공사'라고 한다)를 161,940,000원에 각 하수급하였다.

나. 직불합의 등

- G, 원고, F은 2016년경 I동 내장목 공사대금 395,620,000원을 G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J 역시 그 무렵 원고, F과 사이에 K동 내장목 공사대금 161,94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6호증, 이하 위 각 합의서에 의한 직불합의를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 원고는 2017. 1. 25.경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2016. 12. 9.부터 2017. 1. 18.까지 F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3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위 금원 중 241,157,200원은 I동 내장목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나머지 88,842,800원은 K동 내장목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 원고는 2017. 2월경 F과 I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을 579,530,000원으로, 준공일을 2017. 2. 15.로, K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을 213,500,000원으로, 준공일을 2017. 2. 15.로 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F은 2017. 4.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F의 공정증서 금액은 557,000,000원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F이 원고에게 변제할 공사대금은 26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위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을가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액면금 557,560,000원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F은 위 위임장으로 2017. 5.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L종합법률사무소 2017년 제23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권가압류 및 취하

- 원고는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른 내장목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① 2017. 3.

23. G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연립주택 15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95,62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110), ② 2017. 3. 20. J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연립주택 6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1,94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0371).

○ J는 2017. 3. 23. 위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0371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광주지방법원에 161,940,000원을 공탁하였다.

○ 원고는 2017. 3. 29. 위 각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관련 소송 경과

○ 원고는 이 법원 2017가합55553호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 및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1)에 따라 G를 상대로 338,372,800원(= 변경 하도급공사대금 579,530,000원 - F로부터 지급받은 241,157,200원) 및 J를 상대로 124,657,200원(= 변경 하도급공사대금 213,500,000원 - F로부터 지급받은 88,842,800원)을, G 및 J의 실제 운영자 N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유로 N를 상대로 2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19. 5. 2. 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도급자가 직불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으로 G은 154,462,800원(= 395,620,000원 - 241,157,200원), J는 73,097,200원(= 161,940,000원 - 88,842,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으로 증액된 금액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G,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② N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 약정사실을 인정하여 26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 한편, N는 2019. 1. 8. " 2017. 3. 28. 원고로 하여금 다.항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J가 해방공탁한 161,940,000원을 찾아 즉시 지급하고 추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61,9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40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노119),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원고)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9도14933)에서 2019. 12.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F의 재산처분행위

○ F은 2017. 3. 20. 직원인 피고 B, C 및 피고 D,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항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	제1항 부동산	8,100만 원
C	제2항 부동산	1억 7,100만 원
제3항 부동산		
D	제4항 부동산	8,100만 원
E	제5항 부동산	8,100만 원

○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를 다시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	제1항 부동산	2018. 1. 24.	O.	7,200만 원
C	제2항 부동산	2018. 5. 29.	P, Q	8,680만 원
제3항 부동산	2018. 1. 15.	R	7,100만 원	
D	제4항 부동산	2017. 5. 12.	S	8,000만 원
E	제5항 부동산	2017. 11. 20.	T	7,400만 원

○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제1항 부동산	81,000,000원	
2	제2항 부동산	171,000,000원	

1	제1항 부동산	81,000,000원	
3	제3항 부동산	81,000,000원	
4	제4항 부동산	81,000,000원	
5	제5항 부동산	416,000,000원	
6	나주시 U건물 V호		
합계	830,000,000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요양보험료	2017. 2. 20. 17 3.	4,448,920원 3,396,380원	
2	대한민국	고용보험료	2014. 3. ~ 2017. 3.	129,221,190원	
산재보험료	2014. 3. ~ 2017. 3.	274,004,400원			
4	대한민국	법인세, 부가가치세	2016년분	20,084,000원	가산세제외
5	W	물품대금채권	2016. 12. 22.	6,062,100원	원금
6	피고 C	대여금	2017. 1. 1.	200,000,000원	원금
7	X 주식회사	공사대금	2017. 10. 17.	48,400,000원	원금
8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사해행위 이전	800,268,273원	
9	Y 주식회사	대출금 채무	2016. 1. 21.	258,000,000원	원금
합계	1,507,323,153원				

[인정근거]

○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으로 증액된 내장목 공사대금 793,030,000원(= I동 579,530,000원 + K동 213,500,000원)에서 F로부터 지급받은 330,000,000원 및 N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약 413,000,000원²⁾ 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413,000,000원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원고와 F 사이에 정산한 공사대금 260,000,000원에서 2019. 9. 3. N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0원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의 추가공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7. 2월경 F과 I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을 579,530,000원으로, K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을 213,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내장목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금액은 557,0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이 아니라, 최초 하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 557,560,000원(= I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 395,620,000원 + K동 내장목 공사의 공사대금 161,940,000원)과 부합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 및 J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이 아닌 최초 하도급계약상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과 같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이 이 사건 각 변경하도급계약 이후인 2017. 4. 20.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F의 이 사건 내장목 공사사금 지급채무를 260,000,000원으로 확정된 점 및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17. 3. 28.경 G, J, F, 원고가 모여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약 260,000,000원(정확히는 261,94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F과 원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내장목 공사의 미지급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금액에서 원고가 N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 E의 공사대금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① 원고와 G, J, F이 이 사건 내장목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3)에 따라 원고의 F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종전 소송에서 하도급직불합의를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 이를 묵비하고 소멸한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G 및 J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F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나, 하도급법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이 원고와 F 사이의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정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인한 F의 공사대금채무의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2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F은 원고에 대하여 2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종전 소송에서 하도급 직불합의를 주장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4)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 E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금액을 상회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B, E의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가 F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중 F이 주식회사 A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111,021,257원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AA이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8442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F은 이 법원 2018가합5018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2. "AA은 F에게 111,021,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AA의 본소청구 및 F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9. 12. 27.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3649호로 F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57,56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9나25287(본소), 25294(반소)], 광주고등법원은 2020. 9. 10. AA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가 위 추심명령을 하여 F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F이 제기한 반소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위 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사해행위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 E, C,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위 피고들은, F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제1, 2, 3, 5항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 C은 F의 직원으로서 F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피고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년 정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경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 1)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인의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대상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6. 2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F이 피고들에게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2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피고이 매수한 매매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1	제1항 부동산	79,000,000원
2	제2항 부동산	89,000,000원
3	제3항 부동산	79,000,000원
4	제4항 부동산	78,000,000원
5	제5항 부동산	78,000,000원
합계	403,000,000	

3)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B에 대한 안분액은 41,166,253원(= 210,000,000원 × 79,000,000원/403,000,000원, 이하 원 미만은 버림), 피고 C에 대한 안분액은 87,543,424원(= 210,000,000원 × 168,000,000원/403,000,000원), 피고 D, E에 대한 안분액은 각 40,645,161원(= 210,000,000원 × 78,000,000원/403,000,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F이, 피고 B과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41,166,253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과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87,543,42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과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40,645,161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과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40,645,161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41,166,253원, 피고 C은 87,543,424원, 피고 D, E은 각 40,645,1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해림

별지

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1,000,00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였다.

3) 각주 1) 참조